

수수료(제20조 관련)

구 분	수수료액
1.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허가신청(변경허가신청의 경우를 포함한다) 가. 청소년수련관·청소년수련원·유스호스텔·청소년특화시설 나. 청소년야영장·청소년문화의 집	25,000원 17,000원
2.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등록신청(변경등록신청의 경우를 포함한다) 가. 청소년수련관·청소년수련원·유스호스텔·청소년특화시설 나. 청소년야영장·청소년문화의 집	22,000원 15,000원
3.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수련지구조성계획의 승인신청	100,000원